

## 중국 중재제도의 특징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Chinese Arbitration System

이 주 원\* Joo-Won Lee

〈목 차〉

- I. 서 론
- II. 중국의 중재제도 의 현황
- III. 중국중재제도의 특징
- IV. 한·중 간 중재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 V. 요약 및 결론

주제어 : 중국중재제도, 중재지, 중재인선정, 중재판정의 집행, 중재판정  
의 취소

---

\* 대한상사중재원 기획관리본부장, 광운대학교 겸임교수

## I. 서론

최근,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하였으며, 개방화와 더불어 법치국가를 지향하고 있지만, 급속한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법적 인프라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독립적이며, 신속하며, 효율적인 사법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기업과 분쟁이 발생하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sup>1)</sup>.

무역은 격지자간의 거래로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에 순차적으로 이행과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매도인은 대금을 못 받을 위험, 매수인은 원하는 물품을 원하는 조건으로 받지 못할 위험이 상존하며, 이 외에도 정부의 인·허가를 비롯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행불능상태에 빠질 수도 있으며, 운송인과 은행도 계약이행과정에 개입됨으로써 당사자들의 과실없는 손실이 발생되기도 하여, 계약의 체결부터 종료에 이르기 까지 항상 법적 분쟁에 노출되어 있다.

국제무역계약에서의 이러한 법적 문제의 해결에는 소송보다는 중재에 의한 해결을 권장하고 있으며,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당사자간에 중재합의가 있어야 하고 중재합의에는 통상 중재지, 준거법, 중재기관 등이 언급된다<sup>2)</sup>. 그러나 근자에는 중재에 관한 업계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 외에도 중재언어나, 중재인의 수 및 선임방법과 중재비용, 변호사비용 혹은 중재인들의 판단기준 등 평소에는 중재규칙에 맡겨놓던 사항들까지도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중재조항에 삽입하여 두는 경우가 많다.

이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없겠지만 실제로 무역계약에서 중재조항삽입에 관한 협상 시 주요쟁점이 되는 것은 통상 중재지와 중재

1) Turgut Guvenli & Rajib Sanyal, "Perception and management of legal issues in China by US firms",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Vol. 32, 2003, pp. 161-162

2) 강이수, 『국제거래분쟁론』, 삼영사, 2002, pp.361-362

기관이 된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사항만 결정이 되면 나머지 사항들은 자연스럽게 해당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재지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되고, 중재기관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중재지나 준거법이 결정되고 당사자들의 시간과 경비의 지출도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타국에서 중재하는 경우에 자국과 법제 및 법역이 틀리고 관습이나 가치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중국과 같은 체제가 다른 국가와의 거래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 심화되기 마련이다.

중국은 WTO에 가입하는 등 국제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자국의 법규를 정비하여 시장경제에 적합하게 정비함으로써, 자국과 거래하는 외국기업들에게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 중국의 법제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New York Convention<sup>3)</sup>의 가입국이지만 그동안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있어서는 지방의 각급 법원들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등 아직도 중국의 법제들은 겉보기와는 다르게 실무적으로는 다르게 이행이 되는 경우도 산재해 있다.

이는 중재제도와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중재법과, 중국에서의 대표적인 국제중재기관인 CIETAC<sup>4)</sup>의 중재규칙을 검토해보고, 그 법규칙들이 시사하는 유의점들을 도출하여 향후 중국기업과 국제무역계약을 체결하는 무역실무자들에게 중재제도 이용에 대한 약간의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3)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4) CIETAC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의 약어이며, 1954년에 한국의 대한상공회의소와 비슷한 역할을 하며, 中國國際商會(China Chamber of International Commerce : CCOIC)라고도 하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the International trade; CCPIT)산하에 설치되었던 대외무역중재위원회의 전신으로 1988년에 현 명칭으로 개칭된 것임.

## II. 중국의 중재제도의 현황

중국은 1994년 이전까지는 통일된 중재법이 없었고 각 중재관련 기구들에 의하여 중재가 행하여져 있었다. 국내중재는 각 중재관련 기구에 의하여 강제적인 중재로 행해졌고, 외국기업과의 중재는 CIETAC에서 행하여져 있었다. 특히 국내중재는 강제적인 중재로 행해졌기 때문에 중재합의가 필요없었으며, 최종적인 구속력도 없었다.<sup>5)</sup> 중국의 중화민국공화국중재법(이하 중재법)은 개혁과 개방화와 더불어 외국자본을 유치하면서 외국인에게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현행 중재법은 14개의 법률, 80여개의 행정법규, 200개에 달하는 지방법규에 의하여 실시되어 오던 중재를 1994년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제정되었으며, 1995년 9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현행중재법은 중국의 자체적인 입법경험을 지향함과 동시에 UNCITRAL 모델법을 토대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중재관행 및 서구 국가들의 중재법과 뉴욕협약 등의 국제조약과 세계중재통일화 법안<sup>6)</sup> 등에 나타난 장점을 두루 참고하여 제정되었다. 중국의 중재법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 하에 규정되었다.

첫째, 중재는 당사자 자치원칙을 존중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재합의를 중재의 전제조건으로 하여 중재기관은 서면중재합의가 있는 사건만 접수하도록 하였다. 특히 중재조항은 그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과는 분리하도록 하였다<sup>7)</sup>

둘째, 중재합의가 있으면 직소금지의 효력을 갖는다. 중국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섭외경제무역, 운수와 해상분쟁에서 당사자가 계약에서 중재조항을 체결하였거나 사후 서면 중재협의를 거쳐 중화인민 공화국섭

5) Li Yu, "An Introduction to Commercial Arbitration in China", *Dispute Resolution Journal*, May-June, 2003, pp.78-79.

6) 1985년의 UNCITRAL 모델법 및 ICC중재규칙

7) 중국중재법 제19조

외중재기관에 제출할 경우 중국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sup>8)</sup>. 즉, 상거래 당사자들이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을 때 법원은 중재합의가 무효가 아닌 한 분쟁을 접수하지 않도록 하였다. 중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재법 상에 중재합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를 규정하였다.

셋째, 중재절차의 순조로운 진행과 안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 그리고 결정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당사자는 재산보전조치와 증거보전조치를 신청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였다.

넷째, 중재판정은 최종적이어서 당사자를 구속하며, 법원에 의하여 강제집행될 수 있다. 당사자가 중재판정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중재가 최종적이라고 하지만 법원은 중재판정을 취소하거나 중국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하여 판정의 강제집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재판정취소는 중재판정 후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중국에서 중재는 국내중재와涉外중재로 이원화되어 있다. 중국은 2003년 현재 중재위원회가 160개 이상이 설립되어 있으며<sup>9)</sup>, 중재절차는 행정부나 사회조직 또는 개인으로부터 간섭없이 독립적으로 행해지도록 하였다. 중재심리 중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 조정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sup>10)</sup>. 특히 중국중재법은 국제중재를 위한 특별규정을 두어 외국과 관련된 중재판정취소 및 강제집행의 거부 시에는 민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임의중재를 규정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기관중재를 규정하고 있다. 중재법 제16조에는 중재위원회를 지정하는 서면 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중재법제18조에는 당사자들이 중재위원회에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합의는 무효라고 규정함으로써 임의중재는 중국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sup>11)</sup>.

8) 중국민사소송법 제25조

9) Li Yu, op. cit., p.81

10) 중국중재법 제51조

11) LI Yu, op. cit., p.84

### Ⅲ. 중국중재제도의 특성

#### 1. 기관중재와 임의중재

중국중재법에서는 기관중재만을 인정하고 임의중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sup>12)</sup>. 중재기관이 중재절차의 성공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점을 고려하여 중재법 입안자들은 중재법 초안 작성 시에 기관중재를 제창하는 방향을 채택하였다<sup>13)</sup>.

즉, 중국중재법에서는 중재합의에 포함될 내용으로 중재위원회의 지정을 분명히 하고 있다<sup>14)</sup>.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중재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소위 임의중재(Ad-Hoc Arbitration)를 허용하는 규정은 없다.

중국에서의 중재기관은 국내중재기관과 섭외중재기관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국내중재기관으로는 각 지방의 중재위원회가 있고, 섭외중재기관으로는 CIETAC과 CMAC<sup>15)</sup>이 있다. 그러나 근자에 들어서는 이러한 중재영역의 구분이 철폐되고 있는 실정으로 CIETAC이나 CMAC에서도 국제중재를 행하고 있으며, 원래 국내중재만을 하기로 되어 있던 각 지방 중재위원회에서도 국제중재를 행하고 있다. 더구나 중국에서의 섭외중재라고 함은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의미하는 국제중재, 즉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지 않은 기업이 포함된 중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포함하여 중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자본이 투자되어 있는 기업이라면 이 기업이 당사자가 된 중재사건은 섭외중재사건으로 분류하여 왔다. 그러나 근자에 들어서는 이러한 구분이 변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구분을 하고 있다.

12) 중재법 제 16조

13) 陳敏,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 - 실질성적진보”, 중국섭외중재년감 1994-1995, 북경 : 법률출판사, 1996, p.1

14) 중국중재법 제16조 및 중국민사소송법 제257조

15) China Maritime Arbitration Commission

중재위원회는 직할시와 성, 자치구, 인민정부소재지의 시에 설치할 수 있고, 중재수요에 따라 기타 구에도 설치할 수 있으나 행정구획마다 설치하지 아니한다<sup>16)</sup>고 규정하여 중재위원회는 중국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만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중재합의에 포함될 사항으로 중재 청구의 의사표시, 중재사항, 선정한 중재위원회를 규정<sup>17)</sup>하여 중재위원회에 대한 지정이 없는 중재합의는 중재합의자체가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

만일 중국에서 ICC 중재법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내려진 판정을 한국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 중재판정은 뉴욕협약 상 집행거절사유 중의 하나인 중재합의의 당사자들이 준거법으로서 지정한 법령에 의하여 또는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전기 합의가 무효인 경우 또는, 중재기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간의 합의와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를 행하는 국가의 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sup>18)</sup>에 해당되어 집행이 거절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중재절차에 적용될 준거법에 대하여도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다는 설과 절차법은 법정지법을 따라야 한다는 설로 나뉘어져 있으나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의 준거법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뉴욕협약에서도 당사자간에 중재절차의 준거법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지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중국 내에서 ICC중재규칙에 따라 임의중재의 형식으로 내려진 중재판정의 집행을 허가해준 전례가 있어 주목된다.

중국에서의 중재기관은 중재위원회는 직할시와 성, 자치구 인민정부소재지 시에 설립할 수 있고, 수요에 따라 구를 둔 기타 시에 설립할 수도 있는 바, 중재위원회는 이러한 시 인민정부가 관련 부서와 상회

16) 중국중재법 제11조

17) 중국중재법 제16조

18)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제1호 및 4호

를 조직하여 통일적으로 설립한다(중재법 제10조 참조). 중국국제경제 무역중재위원회와 해사중재위원회는 CCPIT(China Council for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혹은 중국국제상회라 한다)내에 설립되어 있다(중재법 제66조 참조). 그러나 CIETAC과 CMAC는 독립된 중재기관이라고 하나 이는 해사중재를 독립하여 대외적으로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함일 뿐, 실제로는 같은 사무실에 같이 있으며, 판정실이나 기타 모든 시설을 같이 사용하며, 주석도 같은 사람이 맡고 있어 결국 동일 중재기관 내에 다른 부서에 해당하는 정도일 것으로 추측이 된다. 이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해사중재팀을 별도로 두어 해사중재의 전문성을 피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중재위원회는 주임 1명, 부주임 2명 내지 4명, 위원 7명 내지 11명으로 구성한다. 중재위원회의 주임, 부주임과 위원은 법률·경제무역전문가와 실제 사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담당한다(중재법 제12조). 섭외중재위원회는 주임 1명, 부주임 약간 명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섭외중재위원회의 주임, 부주임, 위원은 중국국제상회가 초빙 임명할 수 있다(중재법 제66조 참조).

## 2. 중재인 선정

중재의 관할과 판정부의 구성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절차규칙과 중재지에 대한 합의에 따른다<sup>19)</sup>. 그러나 CIETAC 중재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은 중재통지의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의 중재인 명부에서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하거나 또는 중재위원회 의장에 지명권을 위임한다. 제3중재인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지명하거나 또는 당사자 공동의 위임에 의하여 중재위원회 의장이 지명한다. 피신청인의 중재

19) David J. Howell, An overview of arbitration practice in Asia, *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Review*, 2001.11, Vol.4 Issue 5, Sweet & Maxwell, p.143



통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당사자가 공동으로 제3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거나 그 지명을 중재위원회 의장에게 위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3의 중재인은 중재위원회 의장이 지명하도록 하여 CIETAC에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이 별도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재위원회의 중재인명부에서만 중재인을 지명하도록 하여 중재인 지명에 대한 당사자들의 자율권을 많이 축소시키고 있다<sup>20)</sup>. 그러나 2005년에 개정된 CIETAC의 중재규칙에서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자체 중재인 명부에 없는 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으나 그 경우에도 CIETAC의 심사를 받도록 하여 사안에 따라 외부 중재인이 거부될 수도 있다. 또한 다른 중재기관에서 중재인을 당사자들이 직접 지명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 통상 3인 판정부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이 각각 1인 씩 중재인을 지명하고 이렇게 지명된 두 중재인이 합의하여 제3중재인을 지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독 중재인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1인을 지명하고 그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지명권자가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중재규칙이나 중재법에서 3인 중재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각 1인 씩 중재인을 지명하고, 또 다시 두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의장중재인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독 판정부에서는 다른 외국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중재인을 지명하고 합의가 없으면 중재위원회에서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에서는 의장이나 단독중재인이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될 확률이 거의 없으므로 결국은 중재기관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 중재는 중재인이 가장 중요한데 단독 중재인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3인 판정부에서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중재절차라고 할 때에 중국의 중재인 선임방법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재위원회는 중재인 명부를 두며<sup>21)</sup>, 섭외중재를 담

20) CIETAC 중재규칙 제16조 및 제24조 및 중국중재법 제30조 내지 32조

21) 중재법 제13조

당하고 있는 CIETAC의 경우 중재인은 중재위원회가 법률, 경제·무역,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과 실제경험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외국의 인사 중에서 초빙 임명한다<sup>22)</sup>. 필자가 2002년 7월에 CIETAC을 방문하였을 때 총 중재인 수는 518명이었으며, 그 중 외국국적을 가진 중재인이 174명이며, 한국인 중재인도 6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중재인 선정방법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명부 외에서도 얼마든지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23)</sup>.

특히 중국의 중재법은 “당사자가 채택한 중재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경우, 쌍방은 스스로 중재합의를 해야 하며, 중재합의 없이 당사자 일방이 중재를 신청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이를 수리할 수 없다”<sup>24)</sup>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중재는 급별 관할 및 지역관할을 시행하지 아니한다”<sup>25)</sup>라고 규정하여 기관중재만을 규정하고 있고 중재기관의 설립에 대하여서도 그 설립근거를 중재법에 두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중국중재법에 의하여 진행되는 중재는 모두 중국중재법에 따라 중국의 중재위원회의 기관중재로 진행되어야 하며, 중재인 또한 그 기관의 중재인명부에서만 선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재법은 임의중재를 그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인의 수나 선정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sup>26)</sup>, 중재절차에 관하여서도 당사자들의 합의가 우선하며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판정부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sup>27)</sup>

22) CIETAC 중재규칙 제10조

23) 대한민국중재법 제12조(중재인의 선정) 제1항 내지 제4항,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20조(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선정) 제2항 및 제3항

24) 중국중재법 제4조

25) 중국중재법 제6조

26) 대한민국중재법 제11조(중재인의 수) 및 제12조 제1항 내지 4항

27) 대한민국중재법 제23조(중재절차)제1항 내지 제2항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중재인의 수나 중재인선정방법 및 기타 중재 절차 등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들에 대한 절차규칙을 가지고 있는 중재기관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으므로 선택적으로 기관중재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나라에서는 임의중재가 시행되어 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은 경우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기관중재가 대중을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세계의 어느 나라도 설사 당사자들이 어느 중재기관의 기관중재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재인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한 사항들은 별도로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sup>28)</sup>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나 중국은 강행적으로 기관중재를 택하도록 하고 있고, 중재인 선정에 관하여서도 당사자들이 선택한 중재기관의 중재인명부에서만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재기관도 당사자들이 합의로 자유롭게 아무 중재기관이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중재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재기관 중에서만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sup>29)</sup>.

국제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당사자들이 상대방 국가의 국가법원의 중립성을 믿지 못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선정한 규칙과 중재인에 의하여 보다 중립적인 해결을 원하기 때문이다<sup>30)</sup>.

중국의 중재법이나 CIETAC의 중재규칙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재인은 공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중재인의 기피사유로는 중재인이 사건당사자 또는 당사자·대리인의 근친, 친척인 경우,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건 당사자·대리인과 기타 관계를 가지고 있어 공정한 중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은밀하게 당사자·대리인을 접견하거나 또는 당사자·대리인의 접대나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기피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sup>31)</sup>

28) Clare Ambrose and Karen Maxwell, London Maritime Arbitration, Lloyd's Shipping Library, 2002, pp.102-106

29) 중국중재법 제2장(중재위원회와 중재협회) 제10조 내지 제15조

30) Lucille M. Ponte & Thomas D. Cavenagh, op.cit., pp.234-235

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중재인의 공정성에 대하여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3. 중재심리절차

CIETAC에서는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위원회에 부탁하여 중재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모두 이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sup>32)</sup> 당사자 자치가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물론 가장 최근의 중재법의 개정시에 예전에 비하여 당사자자치를 대폭 인정하여 일정한 경우에 당사자들이 중재규칙을 선택하거나 보충할 수 있도록 당사자자치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이는 흔히 중재의 강점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자율적인 분쟁해결제도라는 면에 심히 위배되는 규정이다. 또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기관과 중재규칙을 선택하거나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을 적절하게 수정하거나 보충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과 대조를 이루는 규정이다.

중국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에 대하여 구술심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두심리에 의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중재신청서, 답변서 기타 자료만을 근거로 판정할 수 있다<sup>33)</sup>.

중국에서는 서면통지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중재판정부에 출석하지 않거나 중재판정부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장한 경우에는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서면통지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중재판정부에 출석하지 않거나 중재판정

31) 중국중재법 제34조

32) CIETAC중재규칙 제7조

33) 중국중재법 제39조

부의 허가없이 중도에 퇴장한 경우에는 권석판정을 할 수 있다<sup>34)</sup>. 한국에서는 심리에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그 때까지 제출한 서면과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중재판정부가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증거를 자체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sup>35)</sup> 이는 한국에서의 시각에서 보면 중재인의 불공정과 관련지을 수 있기도 하지만,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이것은 당사자의 거증책임과는 성질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당사자의 거증은 당사자가 당연히 부담하는 의무이며, 그 목적은 제시한 증거를 통하여 중재판정부로 하여금 그 법률사실이 객관적이며 합법적이란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중재판정부가 증거를 조사하거나 수집하는 것은 그 직권의 행사이며 그 사건의 진상을 더욱 분명히 밝히고 사건심리를 더욱 공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중재판정부가 증거를 수집하더라도 당사자는 거증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sup>36)</sup>. 또한 이는 자본주의 국가의 제도 하에서의 중재제도는 순전히 사적자치이므로 만일 피조사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할 방법이 없으나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사안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재판정부가 전문성을 띤 문제에 대하여 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약정한 감정부서에 교부하여 감정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정부서에서 감정할 수도 있다<sup>37)</sup>.

34) 중국중재법 제42조

35) 중국중재법 제43조

36) 陶春明·王生長,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정서이론여실무」, 북경: 인민중국출판사, 1992, p.31(윤진기, 중국중재법, 「기업법연구 제12집」, 2003 p.242에서 재인용) CIETAC 중재 규칙 제7조 참조

37) 중국중재법 제44조

#### 4. 판정의 집행

중국에서 중재 판정의 집행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1991; PRC's Civil Procedure Law)과 중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중국에서의 중재는 중재 기구의 성격에 따라 섭외중재판정, 외국중재판정 및 국내중재판정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중재 판정의 집행과 집행 거부 및 취소 등과 관련하여 다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섭외중재판정이란 계약 체결의 주체 일방 혹은 쌍방이 외국인, 무국적인, 외국 법인 또는 기타 경제 조직이거나 계약의 목적물이 외국 영토 내에 있거나 혹은 민사 권리·의무를 발생, 변경 혹은 소멸하는 법적 사실이 외국에서 발생하였을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경우에서 발생한 분쟁을 중국의 섭외중재기구(CIETAC와 그 분회) 또는 섭외CIETAC에서 내린 중재 판정과 홍콩, 대만, 마카오와 관련된 중재판정이다.

이에 반해 외국중재판정이란 중재의 진행지와 상관없이 외국중재기구에서 내린 중재 판정을 의미하며, 국내중재판정이란 국제 또는 섭외요인이 없는 중국중재기구의 중재판정이다.

이 중에서 섭외 및 외국중재판정은 피신청인의 법정 주소지 혹은 재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국내중재판정은 기층인민법원)에 신청하며, 중급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는데 피집행인의 재산이 없을 때에는 고급인민법원에 재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고급인민법원의 감독을 강화한 것이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신청인 본인이 서명한 신청서에 집행 신청의 사유, 집행 목적물 및 신청인이 파악하고 있는 피집행인의 재산 상황 및 양당사자의 인적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재 판정서(판정문) 원본과 중재합의서 또는 중재 조항을 명기한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신청서는 반드시 중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기타 서류는 중문 번역본을 공증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바, 중재기구 소재지국 중국 영사관의 인증 혹은 중국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중재 쌍방 혹은 일방이 자연인일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쌍방이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일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강제집행청구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기 번역 등 서류를 갖추어 신청을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판정이 내려지면 상대방의 의사타진이나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별도로 신청준비를 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그동안 중국에서는 외국중재판정은 집행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왔으나<sup>38)</sup>,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자신들의 법제를 현대화하고 외국중재판정도 뉴욕협약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 줄 것을 각급법원에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의 개편만으로 오랫동안의 인습이 쉽게 타파되지 않았다<sup>39)</sup>.

그러나 1995년 8월 28일 “인민법원의涉外중재 및 외국중재사항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는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에서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중국涉外중재기구 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외국중재기구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중국의涉外중재기구가 민사소송법 제260조에 규정한 사유 중의 하나를 구비하고 있거나,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신청이 중국이 참가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불집행의 재정 또는 승인 및 집행의 거절 전에 반드시 당해 관할지역의 고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38) 윤진기, 중국중재법, 「기업법연구제12집」(2003), p.263

39) 이러한 사례의 예를 들면 영국인 당사자와 중국인 당사자간의 중재에 있어 영국측 당사자는 중국측 법원에 피신청인의 예금동결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측이 협조하지 않은 사례와 또 다른 영국인 당사자가 중국의 인민법원(寧夏省 소재)에 집행신청한 중재판정을 법원측은 현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집행을 거절한 바가 있다. 전자는 결국 집행하였으나 후자는 영국인 당사자가 결국 포기한 케이스였다(성백영,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의 내용과 문제점 고찰-涉外중재제도를 중심으로,」한중법학회 정례학술발표회 발표논문, 1998. 3. 26, p.33)

요청해야 한다. 만약 고급인민법원이 불집행 또는 승인 및 집행거절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심사의견을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최고인민법원의 회답을 기다린 후에 비로소 불집행 또는 승인 및 집행의 거절을 재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sup>40)</sup> 종래와 같은 지방 인민법원의 자의적인 집행거절은 근자에 들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이 제도를 만든 취지는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중국 내에서 집행을 용이하게 하여줌으로써 중국의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보여진다.

## 5. 판정의 취소

한국의 중재법 상에는 법원이 관여할 수 있는 경우가 명확히 구분되어져 있으며, 그 외에는 법원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당사자자치라는 중재의 특징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법원의 관여가 매우 많은 편이며, 중재기관과 법원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중재판정의 취소에 있어 중재법 58조에 의거 절차상 하자과 실체적 하자과 나누어 법원이 심사를 하고 있다. 심사에 있어 절차상 하자라고 함은 ①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 ②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사안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③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경우 ④ 중재인이 뇌물을 수령하였거나 개인적 영리를 위해 기만행위를 하였거나 법 적용을 그르친 경우 등으로 우리나라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판정취소사유로서 절차상의 하자만을 고려할 따름이지 판정내용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히 1999년 12월 31일자로 중재법이 개정이 될 때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40) 윤진기, 중국중재법상의 문제점과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중재제291호, 대한상사중재원, 1999 봄, p.89



에 있는 재심사유도 배제하였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법원이 중재판정의 내용도 심사하여 내용상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자세한 내용으로서는 ① 재판정의 근거가 된 증거가 위조된 것일 경우 ② 상대방사자가 기밀로 한, 판단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가 밝혀진 경우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구 중재법 하에서의 재심사유와 동일한 내용이다. 그러나 국제중재의 경우의 취소사유로는 ①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 ② 피신청인이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③ 중재절차에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④ 또는 그 자신의 사유가 아닌 이유로 인하여 의견을 개진하지 못한 경우 ⑤ 중재인 선정 또는 중재절차가 중재법규를 위반한 경우 ⑥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사안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sup>41)</sup> 등이다.

## IV. 한·중간 중재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 1. 중재지를 한국으로 하는 경우

국제무역계약에서 분쟁이 발생되면, 모든 당사자는 자국의 중재기관에서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 이유는 물론 시간적·금전적 이유도 있지만 그에 앞서 각국이 법제, 문화, 가치관 등을 서로 달리하기 때문에 타국에서 중재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국인의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과의 거래에서 우리나라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중국을 중재지로 하는 중재조항을 많이 삽입하여 왔다. 그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이 뉴욕협약에 가입은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외국중재판정을 중국에서 집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는 중국의 각 지

41) 중국중재법 제70조 및 중국민사소송법 제260조

방법원의 법관들이 지역이기심에 의해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 별로 호의적이지 못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집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란 우려때문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는 중국도 뉴욕협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장치까지 마련하였으므로, 중국에서 중재판정을 받아 중국에서 집행을 하는 것보다, 한국기업으로서는 한국에서 중재판정을 받고 중국에 가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업계에서는 중국과의 무역계약협상시 중재지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2. 중재지를 중국으로 하는 경우

중재지를 중국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단 비용이나 시간 상의 손해는 감수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에서는 임의중재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관중재만을 이용하여야 한다. 기관중재의 경우에도 중국법에 의해 설립된 중국 중재기관의 중재만 허용된다. 현재 중국에서는 CIETAC이 섭외사건을 처리하는 대표적인 중재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중재제도의 특징 중의 하나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재인을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인 명부에서만 선정하던가 외부중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국인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행히 CIETAC의 중재인 명부 중에서는 한국인이 몇 명이 있으므로 이 중에서 선정하던가, 또한 앞으로 CIETAC의 관행에 따라 외부중재인의 선정이 허용된다면 불이익을 다소나마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부 중재인의 선정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미리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단계에서 CIETAC의 중재인 명부가 아닌 다른 사람을 국적이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다는 특약조항을 삽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재계약에서 언어문제를 합의해 놓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아무리 중국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언어는 중국어 보다는 영어로 하는 것이 좋다.

분쟁이 발생한 후에 서면의 중재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중재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조차 어렵다. 따라서 사후의 중재부탁 가능성을 믿기보다는 사전의 중재조항만이 분쟁에서 교역 당사자를 보호할수 있다는 사실을 기업인들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에서는 중국중재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중재기관의 기관중재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중재기관의 중재규칙으로 중국에서 중재한다던가, UNCITRAL중재규칙으로 중재한다던가 하는 조항들은 그 중재조항 자체가 무효가 된다.

## V. 요약 및 결론

중국의 중재제도는 최근에 중재법을 개정하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당사자 자치원칙을 존중하고 중재조항의 본 계약과의 독립성을 인정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재법 상에 중재합의의 무효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중재는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로 이원화되어 있고 국내중재의 경우에는 2003년 현재 160개 이상의 중재기관이 지방별로 설립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는 중재기관들이 서로 다른 영역의 중재하고 있으므로 중재기관별로 국제중재나 국내중재만을 하는 것은 아니고 모두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분쟁해결제도의 큰 특징 중의 하나인 조정제도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특히 중국중재법은 국제중재를 위한 특별규정을 두어 외국과 관련된 중재판정취소 및 강제집행의 거부 시에는 민사소송

법 제260조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이 민사소송법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미 1999년 12월 31일 중재법 개정 시에 사라진 조항이다. 따라서 중재심리 시에 중재인이 판단을 놓치지 않도록 당사자들이 쟁점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도 한 요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중재제도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서 임의중재를 규정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재법에서 기관중재만을 규정하고 있다. 중재법 제16조에는 중재위원회를 지정하는 서면 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중재법제18조에는 당사자들이 중재위원회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합의는 무효라고 규정함으로써 임의중재는 중국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중재조항의 삽입 시에 중재기관명을 명확히 기재하여 중재합의가 무효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중재인선정과 관련하여서도 당사자간에 합의된 중재기관의 중재인명부에서 지명하도록 하고 있고, 만일 중재인명부 이외에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중재계약 체결 시에 중재인 선정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이 선정할 중재인이 중국의 중재법에 명시되어 있는 무역 및 법률관계의 전문가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3인 판정부의 경우에는 각 1인씩 지명하고 의장중재인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명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국이 지명하며, 1인 판정부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명하고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이 지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IETAC의 명부에는 한국인도 있으므로 이를 잘 보고 한국인을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제3중재인을 당사자들이 다시 합의하도록 한 것은 언뜻 보기에는 당사자자치를 존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3인 판정부에서의 의장이나 1인 판정부에서의 중재인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3인 판정부에서의 의장이나 1인 판 정부는 사무국이 지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될 것이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중국에서 중재를 하였다가 중재인 선정에서 손해를 본 경우가 발생되기도 하였다<sup>42)</sup>. 따라서 사무국에서 선정한 중재인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와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해 보고 의심을 살만한 일이 있으면 즉각 기피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중국에서 외국중재판정은 그 집행이 쉽지 않다고 하여 중국과의 교역 시에는 차라리 중국의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중국은 시장을 개방화하면서 외국기업들에게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New York Convention에 가입하고, 지방보호주의로 인하여 지방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외국중재판정을 취소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제도를 많이 개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에서도 아직 중재제도를 잘 모르는 변호사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도 있으므로 대리인의 선임 시에도 중재제도에 대한 인식이 어느정도 인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중국에서의 중재제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재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중재인 선정과, 중재의 특징 중에서 가장 팔목할 만한 특징인 중재절차진행에 있어 당사자자치가 제한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중재하는 것은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힘들며, 법적 안정성측면에서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거래 시에는 가능한 한 한국의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국에서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중재를 하는 것이 좋으며 중국에서 중재를 하는 경우에는 중재조항 삽입 시에 그 중재기관의 중재인 명부 이외에서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으며, 만일 그러한 내

42) 이주원, CIETAC 중재의 중재절차상 실무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9권 제2호」, 2004.6, pp.185-201

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중재절차에 임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중국 중재기관의 중재인 명부 중에서 한국인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중국중재법과 중국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을 잘 숙지하여 절차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강이수, 『국제거래분쟁론』, 삼영사, 2002
- 성백영,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의 내용과 문제점 고찰 - 섭외중재제도를 중심으로,」한중법학회 정례학술발표회 발표논문, 1998. 3. 26
- 윤진기, 중국중재법, 『기업법연구제12집(2003)』
- 윤진기 중국중재법상의 문제점과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중재제291호, 대한상사중재원, 1999 봄
- 이주원, CIETAC 중재의 중재절차상 실무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9권 제2호』, 2004.6
- 陳敏,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실질성적진보”, 중국섭외중재년감, 1994-1995, 북경 : 법률출판사, 1996
- 陶春明·王生長,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정서이론여실무」, 북경 : 인민중국출판사, 1992
- Turgut Guvenli & Rajib Sanyal, “Perception and management of legal issues in China by US firms”,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Vol. 32, 2003
- Li Hu, “An Introduction to Commercial Arbitration in China”, Dispute Resolution Journal, May-June. 2003
- David J. Howell, An overview of arbitration practice in Asia, 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Review, 2001.11, Vol.4 Issue 5, Sweet & Maxwell
- Clare Ambrose and Karen Maxwell, London Maritime Arbitration, Lloyd’s Shipping Library, 2002

Henry Campbell Black, M. A., Black's Law Dictionary sixth ed., 1990  
Compiled and Edited by Douglas H. Yarn, Dictionary of Conflict Resolution,  
Jossey-Bass Publishers, San Francisco, 1999.  
Domke on Commercial Arbitration, Martin Domke, Callaghan & Company,  
1968

## ABSTRACT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Chinese Arbitration System

Joo-Won Lee

In the provisions of "the Arbitration Law of China, there are special provisions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When a court refuses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or cancel the domestic awards relating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y have to adopt the provisions of "Chinese Civil Procedure Law". These provisions are the same as the provisions of Korean Civil Procedure Law concerning the reasons of renewal. In the Korean Arbitration Act, those provisions disappeared when it was revised on December 31, 1999.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arbitration system, a serious question is that it provides only institutional arbitration and there is no ad-hoc arbitration in the Chinese Arbitration Law.

On the other hand, when the parties appoint three arbitrators according to their agreement, the parties appoint the third arbitrator by mutual agreement and when they fail to agree, the Arbitration Committee appoints the third arbitrator. In practice, as the parties hardly agree on the third arbitrator or sole arbitrator, the Committee usually appoints them. And appointing an arbitrator from out of their panel of arbitrators is permitted these days only under examination by the Arbitration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Other arbitration committees except 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are still prohibited from making appointments from out of their panel of arbitrators.

Accordingly, arbitration in China cannot be predicted and poses a question about legal stability as party autonomy is restricted in the appointment of arbitrators and arbitral procedure.

Such being the case it is strongly recommended to select Korea as the place of arbitration in transactions with China. However it is better to arbitrate than to file a law suit in China.

**Key Words** : The Place of Arbitration, composition of the Arbitration Tribunal,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Refuse and cancel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